◉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191호

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

'접합부에 횡방향 연결재를 설치하고 횡방향으로 긴장한 바닥판 일체식 프리캐스트 PSC 박스거더'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4월 11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신기술개발자

신청인(1)	법인명(성명)	브릿지테크놀러지(주)		
	주 소	우 24431 강원도 춘천시 하사관길 26-5, 1층(삼천동)		
	전화번호	02-732-0217	팩스번호	031-8018-4727
신청인(2)	법인명(성명)	현대건설(주)		
	주 소	우 03058 서울특별시 종구 율곡로 75 (계동)		
	전화번호	02-746-1114	팩스번호	02-746-4856
신청인(3)	법인명(성명)	㈜케이알티씨		
	주 소	우 08807 서울특별시 관악구 승방4길 14(남현동)		
	전화번호	02-2186-1800	팩스번호	02-2186-1995
신청인(4)	법인명(성명)	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		
	주 소	우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, 연세대학교		
	전화번호	02-2123-5163	팩스번호	02-2123-8620

2. 신기술의 개요

○ 지정번호 : 제763호

○ 명 칭 : 접합부에 횡방향 연결재를 설치하고 횡방향으로 긴장한 바닥판 일체식 프리캐스트 PSC 박스거더

○ 기술분야 : 토목 > 교량 > 교량거더

○ 신기술의 내용

이 신기술은 바닥판 일체식 중공형의 PSC 박스거더를 병렬로 밀착하여 거치한 후 박스거더 사이의 횡방향 연결구간에 경사각을 갖는 강관연결재(Easy-bar) 및 철근 이음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일정간격으로 배치된 횡방향 강연선을 긴장하여 상부거더를 일체화시키는 프리캐스트 PSC 박스거더로서, 저형고 및 급속시공이 가능하고 편측 캔틸레버를 갖는 외측거더를 적용함으로써 캔틸레버 길이 변화로 곡선교의 곡률반경 적용이 가능하며 횡방향 인접 교량의 시공 시 횡방향 긴장을 위한 작업공간 확보가 가능한 기술이다.

○ 신기술의 범위

외측 거더에 편측 캔틸레버를 포함하여 미리 제작된 바닥판 일체식 중공형 PSC 박스거더를 병렬로 배치하고 횡방향 연결재(경사 강관연결재, 철근 이음) 및 횡방향 긴장을 통하여 일체화시키는 프리캐스트 PSC 박스거더

3.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

가. 보호기간 : 2015.04.20. ~ 2029.04.19.(14년)

나. 보호내용 :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

○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

○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,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

○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

4. 기 타

○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(http://www.kaia.re.kr)「지식/성과도서관/신기술·추천기술」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